

교회음악연구소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과 위치) 본 연구소는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본 대학교라고 한다) 부설 “교회음악연구소”라 칭하고 본 대학교 내에 둔다.

제2조 (목적) 교회음악연구소는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와 한국교회음악 발전과 확대에 기여하려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다.

제3조 (사업)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.

1.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
2. 국내외 교회음악연주자 및 석학 초청 연주회 및 특별강연 개최
3. 다양한 교회음악 교재와 지역교회에 필요한 콘텐츠를 소개 및 발간

제2장 조 직

제4조 (임직원) 본 연구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1. 소장 1인
2. 운영위원 약간명
3. 행정조교 약간명

제5조(자격 및 임명) ① 본 연구소의 소장은 교회음악을 전공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를 전공한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조교는 본교 조교인사규정을 따른다.

제6조 (임기) 본 연구소의 모든 임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 (직무)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을 관장한다.

② 조교는 소장의 지도하에 연구실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8조 (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본 연구소의 제반 운영에 관한 중요 업무를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 (소집과 의결)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10조 (재원)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서울신학대학교 연구 지원비
2. 외부의 연구 지원비
3. 기타

제11조 (회계연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12조 (승인)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집행하며, 소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규약의 개정)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.

제2조 (기타사항) 본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신학대학교 부설 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.

제3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년 6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